인천CRPD세미나

장애인학대 No, 학대신고On

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

관장 김 호 일

UN장애인권리협약

제1조 목 적

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,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다.

▶2006.12.13 제61회 유엔총회 채택
▶2008 국제법 발효
▶2008.12.02 국회 본회의 통과
▶2014 제1차 국가보고서 제출
▶2019 제2, 3차 국가보고서 제출

UN장애인권리협약

보편적권리

제10조 생명권
제11조 위험 상황 및 인도적 차원의 위급 상황
제14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
제15조 고문 또는 잔혹,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및 차별로부터의 자유
제16조 착취,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
제17조 개인의 존엄성 보호
제22조 사생활 존중

접근성

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
제6조 여성장애인
제7조 장애 아동
제12조 법 앞에서의 평등
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

제3조 일반원칙

평등과 비차별

제9조 접근성
제12조 법 앞에서의 평등 3항
제13조 사법 접근권
제19조 자립적으로 생활하기와 사회통합 1항 b
제20조 개인의 이동
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자유
제24조 교육 2항
제25조 건강
제28조 적정한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 2항

참여와 통합

제8조 인식제고
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
제26조 훈련 및 재활
제27조 근로 및 고용
제29조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
제30조 문화생활, 레크리에이션, 여가생활과 스포츠 참여

[자료출처] 장애인권리협약으로 보는 장애인인권교육/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9

장애인권익옹호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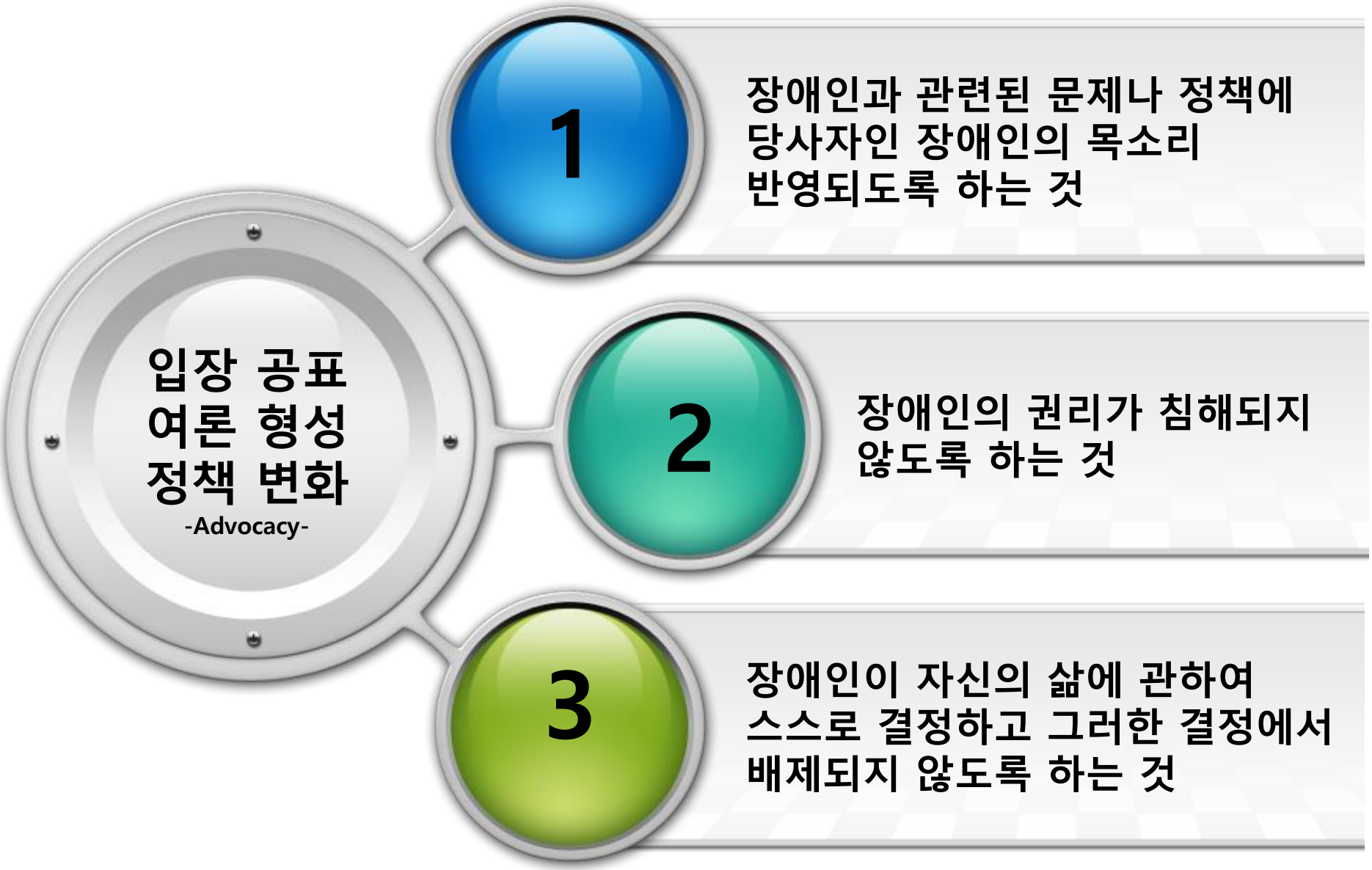


[장애인복지법/ 2012.10.22]
장애인학대 정의, 신고의무자, 금지행위 등 근거 신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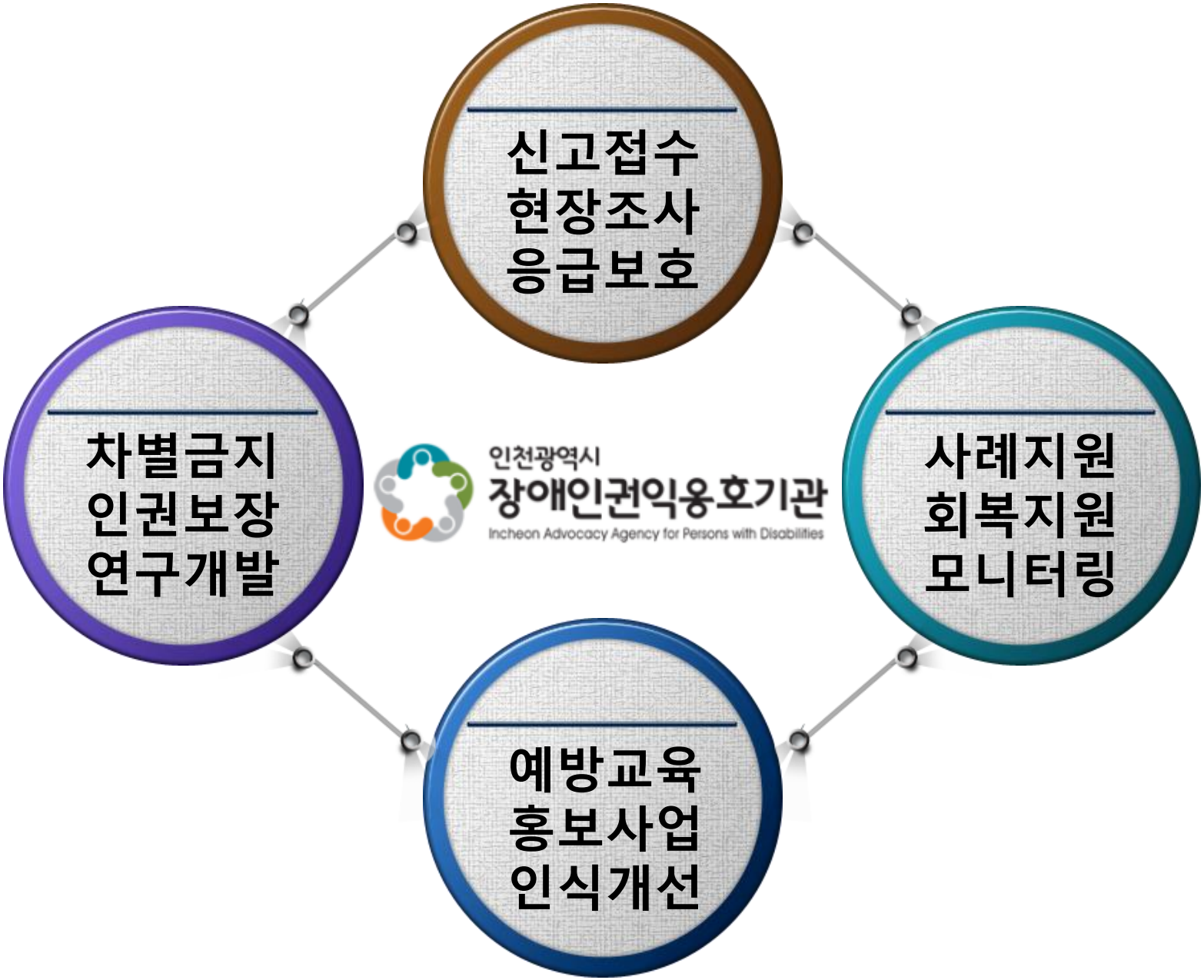


[장애인복지법/ 2015.06.22]
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및 운영, 신고의무자 확대 근거 신설

권익옹호기관의 역할


입장 공표
여론 형성
정책 변화
-Advocacy-
1
장애인과 관련된 문제나 정책에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 반영되도록 하는 것
2
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
3
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그러한 결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

권익옹호기관 주요업무


신고접수
현장조사
응급보호
사례지원
회복지원
모니터링
예방교육
홍보사업
인식개선
차별금지
인권보장
연구개발
인천광역시
장애인권익옹호기관
Incheon Advocacy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

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

신고접수

▼

학대조사

▼

사례판정

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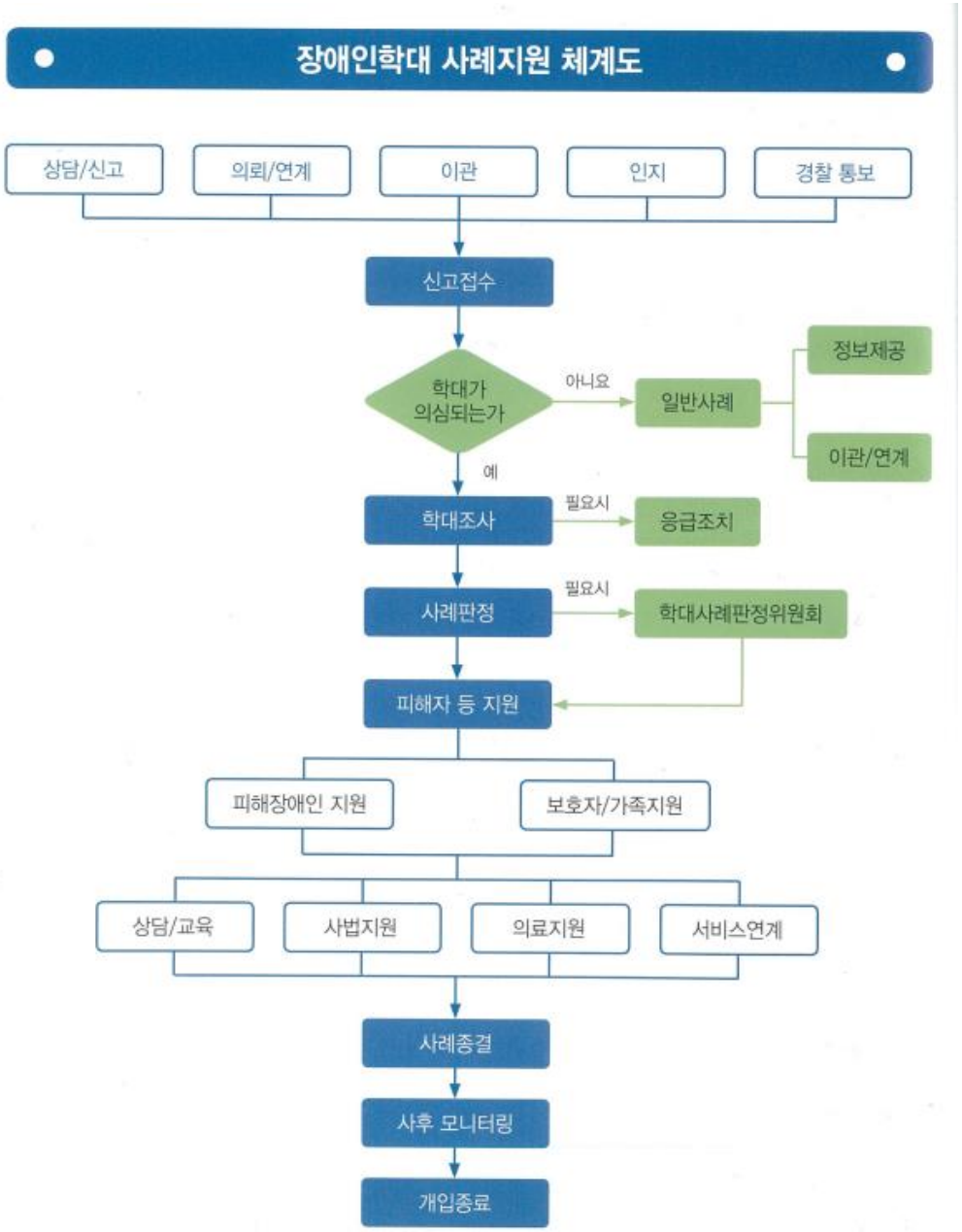
피해자 지원

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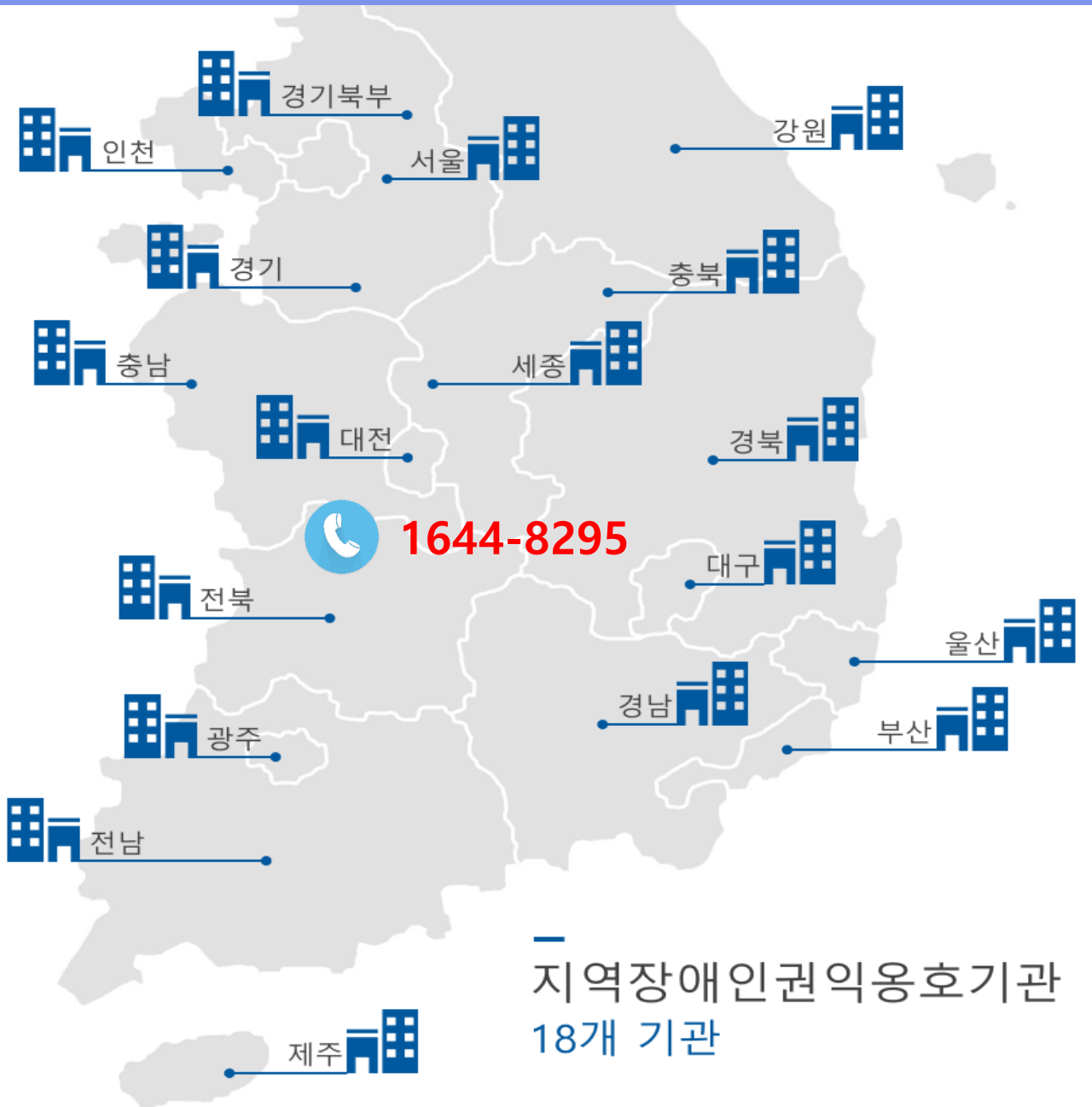
사후관리

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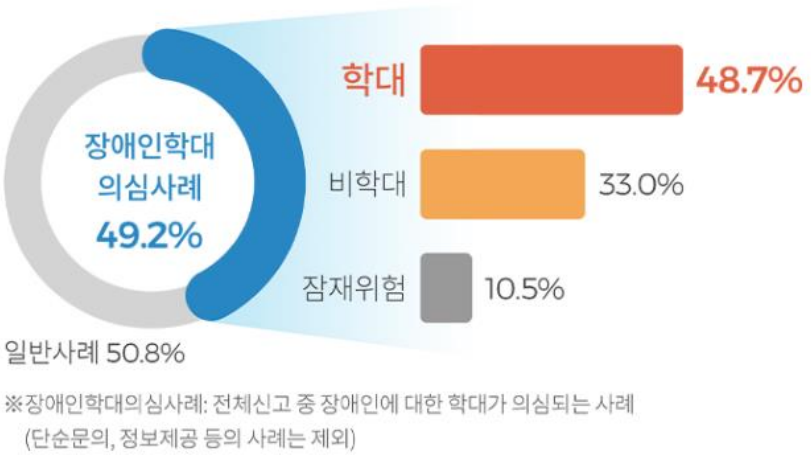
개입종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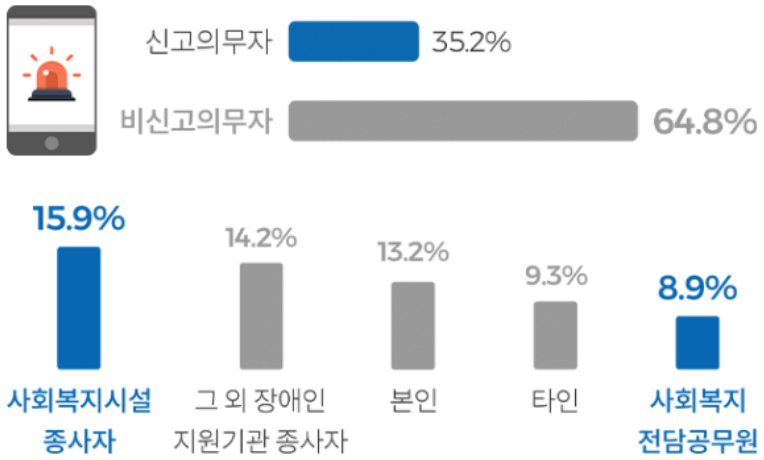


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황(1+1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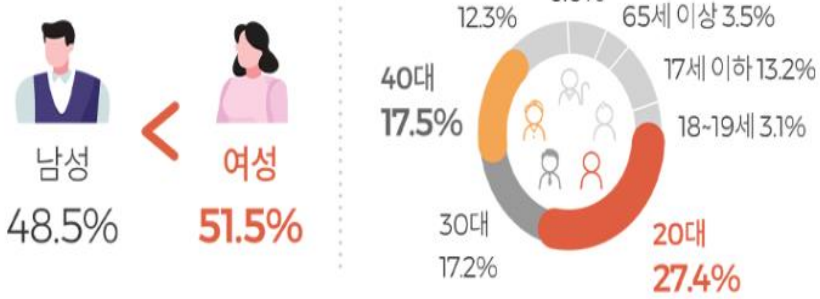


장애인학대현황(2020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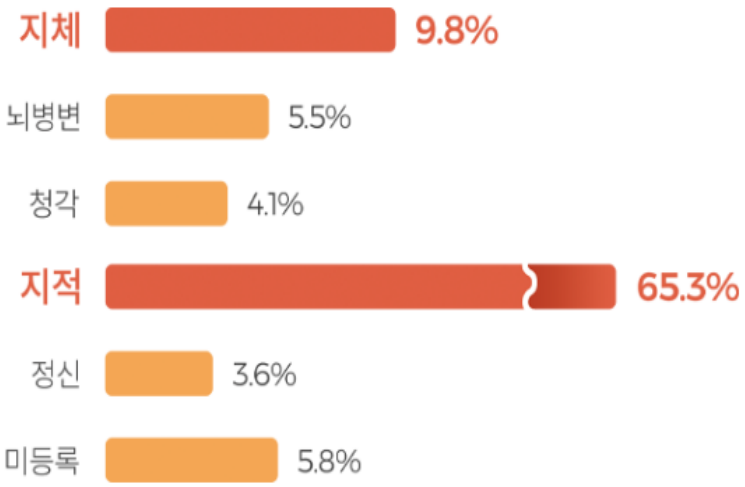






[자료출처] 2020년 장애인학대현황보고서/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

장애인학대현황(2020년)





[자료출처] 2020년 장애인학대현황보고서/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

▶OO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

OOO 학대 사망 사건

▶인천 장애인OO연맹 소속

장애인 선수 상습폭행 사건



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나아갈 길

학대조사
▽
권리옹호

인력&예산
절대 부족

예방교육



기관홍보



실태조사



네트워크



장애인학대 No, 학대신고 On

학대신고 1644-8295(전국공통)

참고자료
1. 학대신고의무자교육 PPT(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)
2. 2020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(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)